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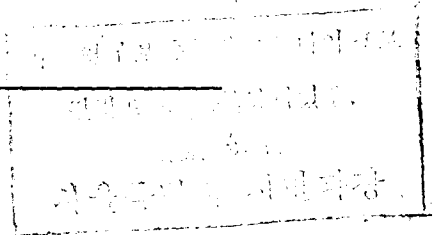
제 3 2 2 호

1972. 11. 30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양 덕 식
편집 : 공보실장 김진호
전화 75-7834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전화 75-6444, 6090

시 보

차 례



◎ 고 시

- 제 173 호 도시계획시설 (화물자동차 정류장) 결정..... 3
- 제 174 호 도시계획도로 (소로) 신설 3

◎ 공 고

- 제 270 호 도시계획 용도지역 일부 변경 4

◎ 사 령..... 4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고시 제 173 호

도시계획시설 (화물자동차정류장) 결정

1. 서울특별시 관내 도시계획시설 (화물자동차 정류장) 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 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2. 11. 27

서울특별시장

가. 시설 조서

시설명칭	위치	면적	비고
경인화물자동차 정류장	영등포구 당산동 2 가 47-2 의 4 필지	16,024.8 m ²	

별첨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도면은 서울특별시청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.

◎ 서울특별시고시 제 174 호

서울도시계획도로 (소로) 신설

1. 서울특별시 관내 도시계획도로 (소로) 신설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1972. 11. 28.

서울특별시장

가. 도시계획소로 신설조서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	연장	기점	종점	비고
신설	소로	4	1	4 ^m	330 ^m	신길동 353-50	신길동 337	
"	"	4	2	4	60	" "	" 353-43	
"	"	4	3	4	208	" 337-23	" 336-2	

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 생략)

도면은 서울특별시청 영등포구청에 보관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270 호

도시계획용도지역일부변경

- 1. 서울특별시 용도지역 일부변경 (건설부고시 제 483 호(72. 11. 16)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 제 5 항의 규정에

가. 용도지역 변경 조서

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1972. 11. 28.

서울특별시장

지 역 별	변 경 m ²		
	기 정	변 경	변 경 후
주 거 지 역	389,643,932	(증) 2,000,000	391,643,932
상 업 지 역	17,485,204		17,485,204
준 공 업 지 역	250,747,000	(감) 2,000,000	48,747,000
녹 지 지 역	262,999,864		262,999,864
계	720,876,000		720,876,000

별첨 도면표시와 같음. (도면생략)

(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)

사 령

◎ 1972. 11. 29.

선 종 만

기한부 공무원 (지방행정서

서울특별시장

기보 김진우의 군복무 휴
 직기간중)에 임함.
 5급을류 2호봉을 급함.
 양정파 군무를 명함.